#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48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한병도・위성곤・정동영

정태호 · 진선미 · 정준호

이춘석 · 김영배 · 서미화

문대림 의원(10인)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

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 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 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 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 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유재산특례"란 양도, 점용허가, 점용료의 감면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영 구시설물 축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 항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양여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 또는 제43조의9에 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사용허가등"이라 한다)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43조의7제1항 및 제43조의8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대체 시설을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가로 공유재산의 양여, 장기사용허가 등을 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 다. 「도로법」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마. 「소하천정비법」
    - 바. 「어촌・어항법」
    - 사. 「자연공원법」
    - 아. 「하수도법」
    - 자. 「하천법」
    - 차. 「항만법」
- 제4조(공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②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③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제5조(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 2. 공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3. 공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 4. 규정하려는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 제6조(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유재산특례신설 등"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특례신설등에 관한 계 획서(이하 "공유재산특례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공유재산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유재산특례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재산특례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 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수 있다.
  - 1. 공유재산특례의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유재산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폐지 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이나 공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 는 제도의 신설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은 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양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해당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은 이법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 이 법에 따른 공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공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제77조, 제79조	조	
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률」 제78조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del>Z</del>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28. 12. 31.
	법」 제16조, 제17조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8	전단 법률」 세20소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_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40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1	「공연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제6조의6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5	「관광진흥법」 제7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특별법」 제19조	사용허가등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9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0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 조의4, 제11조의9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2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2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양여 및 영구시 설물축조		12. 31.
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여	2032.	12. 31.
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3조,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9조,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2. 31.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31	「국회사무처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제127조, 제1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3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3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26	[1.6] 보기배 케트4고	기요구드이 기뻐	2020	10 0	)1
36	「노인복지법」 제5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37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률」 제16조				
3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3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	31.
	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37조				
4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률」 제14조				
41	「농촌진흥법」 제3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	31.
4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4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4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45	「도서관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46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9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	31.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61조, 제			12. 3	31.
	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용허가등, 영구시설물축조			
		및 양여			
48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12. 3	31.
	30조, 제30조의2, 제49조, 제54조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40		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0000	10.0	
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12. 3	31.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50	「도시철도법」 제11조	얏여	2032.	12. 3	31.
5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2029.		
	발법 · 제34조		2023.	14. C	,1.
5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53	「독립기념관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	31.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31.
	- 15圣				
5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양여	2032.	12. 3	31.
	특별법」 제9조				
•			~		

5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5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제4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8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5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3	「법률구조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제 19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65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5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67	「사립학교법」 제3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69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 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구시설물축조	2032. 12. 31.
7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조, 제38조, 제38조의6, 제46조의6, 제46조의7, 제		
	46조의8	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0000 40 01
7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2032. 12. 31.

	제22조의8, 제28조의3, 제34조	시설물축조			
7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	1.
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제46조, 제58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2. 3	1.
7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7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8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제18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8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	1.
8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	1.
84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	1.
85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 등 및 영구시설물 축조	2032.	12. 3	1.
8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46조의3		2032.	12. 3	1.
88	「아동복지법」 제6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8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	1.
9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별법」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	1.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4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	1.
9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	양여	2032.	12. 3	1.
94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	1.

9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2.	31.
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7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9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 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3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10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4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6	「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조의2,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 40조		2032.	12.	31.
10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165조, 제183조, 제222 조, 제261조		2032.	12.	31.
1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양여	2032.	12.	31.
1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양여	2032.	12.	31.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4		y			
1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2.	31.
12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2.	12.	31.
1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 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124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5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6	「초지법」 제17조,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1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2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의2, 제11조의3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양여	2032.	12.	31.
1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및 영구시설 물축조	2032.	12.	31.
1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양여	2032.	12.	31.

13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사용허가등		
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2.	12. 31.
		사용허가등		
136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양여	2032.	12. 31.
14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4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29.	12. 31.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4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 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45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6	「항만공사법」 제2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29.	12. 31.
14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특별법」 제20조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9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제13조의2, 제13조의3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1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		2032	12. 31
	조, 제46조	시설물축조		
1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2032.	12. 31.
	한 법률」 제11조의3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15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56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32.	12.	31.
1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1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0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6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 한 특별법」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양여	2032.	12.	31.
16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장기 사용허가등 및 영구 시설물축조	2032.	12.	31.
165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양여	2032.	12.	31.
16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영구시설물축조 및 양여	2032.	12.	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5조, 제36조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 용허가등 및 영구시설물축 조	2032.	12.	31.
16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 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